

측량기술경력증

발급기관명

유 의 사 항

1. 측량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,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.
2. 측량기술경력증은 양도·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3. 측량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측량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4. 측량기술경력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5. "경력사항" 기재 시 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- 발급번호:
- 성 명:
- 생년월일:
- 현주소:

사 진

(3.5cm × 4.5cm)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○협회장 인

조회일자: 년 월 일(모바일에 한정함)

▶ 기술 자격

종 목 및 등 급	합 격 연 월 일	자 격 번 호

▶ 학 력

기 간	학 교 명	학 과 (전 공)	학 위

